

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[최재규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28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3. 27.

발의의원 : 최재규 의원, 신달호 의원,
이연숙 의원

1. 폐지이유

제정(2019.5.30.)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추진사업이 없고,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 :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

3. 폐지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(법률)」 (2020.12.8. 일부개정, 2021.3.9. 시행)

제24조의2(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·협력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·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·협력을 증진하고, 관련 정책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